



건축민원서비스

• 건축민원 서비스내용

| 건축민원 처리 서비스 분야

- 민원접수·처리시 법정기한을 준수하고, 자체 확인 가능한 공부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신속·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.
- 건축 인·허가 신청전 건축계획과 사전심사를 청구하시면 관련법에 의거 건축가능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드리며, 복합민원 처리로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드리겠습니다.
- 민원 신청서 및 관계법령 등을 제공하여 고객의 이해를 돋겠습니다.
- 업무의 협의와 확인이 필요하여 처리기한이 늦어질 경우 반드시 진행상황을 서면이나 전화로 통보하여 궁금증을 덜어 드리겠습니다.

| 시설공사 처리 서비스 분야

- 1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공사가 자율적인 법규를 준수하도록 사전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.
- 2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품질향상과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- 3 엄정한 품질과 공정관리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민·관 전문가 등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.

| 건축지도 점검 서비스 분야

- 1 건축지도 점검 현장 방문 시 사전에 방문일시 및 목적 등을 알려드린 후 고객의 입장에서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.
- 2 건축지도 점검 시 관련법령 등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적법하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계도 위주의 점검을 하겠습니다.
- 3 건축현장에 대한 지도·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건축공사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.
- 4 건축물 사용승인후에도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법한 건물로 존치 되도록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.

• 민원안내 및 상담

안내 및 상담 업무내용	담당부서	전화번호	비고
건축민원서비스 안내 및 상담	건축과장	063-620-6580	
건축허가 및 부설주차장 관리	건축담당	063-620-6581	
옥외광고물 관리	도시경관담당	063-620-6551	
공동주택관리 및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	주택담당	063-620-6591	
건축물대장 발급 및 건축신고	건축지원담당	063-620-6596	

• 고객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

- 건축공사시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시공하셔야 하며, 항상 공사 시작전에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.
- 착공전에 대지 경계선에 관한 측량을 하여 대지의 범위를 확인하고 이웃 대지나 건물과 소정의 거리를 반드시 띄워야 합니다.
- 건축공사장에는 건축허가 도면을 비치도록 하며, 건축공사 착수전에 건축법에 의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설계 도면에의하여 허가사항대로 시공하셔야 하며, 공사변경 사항 발생시는 공사를 중지하고 사전에 시청(건축과)에 변경허가(신고)를 득한 후 공사를 하셔야 합니다.
- 공사안내판을 일반인이 잘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셔야 합니다.
- 건축물이 완공되면 사용승인을 받으시고, 사용 승인 전에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.
-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사항을 위반(무단용도변경 : 부설주차장 폐쇄 및 조경식재 제거 등)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건축물의 도시환경 가꾸기에 고객 여러분의 참여만이 아름답고 쾌적한 우리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.